

# 지방세지출보고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08년(결산)	'09년(추계)
<b>일반공공행정(010)</b>		<b>합 계</b>	<b>2,351,224</b>	<b>0</b>
1	<b>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할),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①, § 126①, § 162, § 174①1, § 185①, § 238의2①, § 242①, § 245①, § 255①)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 196의4 1,2호)	<b>소 계</b>	<b>1,547,41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1,850	0
		재산세	986,461	0
		자동차세	5,957	0
		도시계획세	257,097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296,045	0
		지역개발세	0	0
2	<b>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②, § 126②)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3	<b>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5②, § 238의2①, § 242①)	<b>소 계</b>	<b>18,178</b>	<b>0</b>
		재산세	12,575	0
		도시계획세	5,603	0
		공동시설세	0	0
4	<b>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255② 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5	<b>정당에 대한 비과세</b> - 정당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1호, § 127①1, § 163①, § 186 1호, § 238의2①, § 242①, § 245의2①1)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6	<b>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25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b>소 계</b>	<b>9,164</b>	<b>0</b>
		취득세	0	0

7	<b>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b>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 면허,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2호, § 127① 2호, § 163②6, § 186 2,5호, § 238의2①, § 242①, § 245의2①2)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8,000	0
		도시계획세	1,164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b>소 계</b>	<b>633,729</b>	<b>0</b>
8	<b>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b>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7①5호)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 도시계획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4호, § 238의2①, § 242①)	등록세	0	0
		재산세	485,742	0
		도시계획세	147,987	0
		공동시설세	0	0
		<b>소 계</b>	<b>142,743</b>	<b>0</b>
9	<b>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b>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등록,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8,235	0
		도시계획세	19,98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84,528	0
		<b>합 계</b>	<b>71,918</b>	<b>0</b>
<b>공공질서 및 안전(020)</b>		<b>합 계</b>	<b>71,918</b>	<b>0</b>
10	<b>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b> -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71③)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소 계</b>	<b>0</b>	<b>0</b>
11	<b>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b> -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71④)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b>소 계</b>	<b>0</b>	<b>0</b>
12	<b>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b> - 천재,지변,소실,도과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08, § 127의2①, § 163②5, § 196의4 5호)	<b>소 계</b>	<b>71,918</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자동차세	71,918	0
		레저세	0	0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지역개발세	0	0
13	<b>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b>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재산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7호 전단, § 242①) -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파주시 020-025)	<b>소 계</b>	<b>0</b>	<b>0</b>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교육(050)</b>		<b>합 계</b>	<b>1,334,528</b>	<b>0</b>
14	<b>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할),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사업소,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①, § 126①, § 162, § 174①1, § 185①, § 238의2①, § 242①, § 245①, § 255①)	<b>소 계</b>	<b>780,728</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3,650	0
		재산세	216,809	0
		도시계획세	128,939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431,330	0
		지역개발세	0	0
15	<b>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②, § 126②)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6	<b>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5②, § 238의2①, § 242 ①)	<b>소 계</b>	<b>0</b>	<b>0</b>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17	<b>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255② 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18	<b>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1호, § 127①1,3 전단, § 163①, § 174①5, § 186 1호, § 238의2①, § 242①, § 245의2①1)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72①2, § 272⑤ 후단, § 272⑥)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조례)	<b>소 계</b>	<b>547,283</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2,600	0
		재산세	223,824	0
		도시계획세	52,102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268,757	0
19	<b>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20	<b>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74①5,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인,허가 받은 비영리시설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b>소 계</b>	<b>1,67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1,084	0
		도시계획세	591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21	<b>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22	<b>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b>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80% 감면(지방세법 §288⑤)	<b>소 계</b>	<b>4,84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772	0
		도시계획세	1,070	0
		공동시설세	0	0
<b>문화및관광(060)</b>		<b>합 계</b>	<b>624,183</b>	<b>0</b>
23	<b>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b>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 §163①, §174①5, §186 1,5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조례) - 향교재단이 1991.12.31 이전에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우대세율 0.07%, 1980.12.31 이전에 임대한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b>소 계</b>	<b>620,476</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20,100	0
		재산세	357,788	0
		도시계획세	184,801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57,787	0
24	<b>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25	<b>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b>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283③)	<b>소 계</b>	<b>0</b>	<b>0</b>
		사업소세	0	0
	<b>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도서관에 관한 등기 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b>소 계</b>	<b>451</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조례)</li> <li>- 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060-061)</li> <li>- 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060-061)</li> <li>-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장 화랑 조각공원에 대한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060-061)</li> </ul>	재산세	364	0
		도시계획세	87	0
		공동시설세	0	0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27	<p><b>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77①)</li> <li>-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77조의2①)( '09신설)</li> <li>-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중과 배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 277조의2②)( '09신설)</li> <li>-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28	<p><b>체육진흥을 위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②)</li> <li>-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부산,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 세액의 20% 경감(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경상남도, 060-063)</li> <li>-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 경감(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060-063)</li> <li>-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광명동 경륜장)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50% 경감(개별감면조례, 경기도, 060-063)</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레저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29	<p><b>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①9, 060-064)</li> <li>-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4호, § 238의2①, § 242①)</li> <li>-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 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조례)</li> <li>-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종로구, 060-064)</li> </ul>	<b>소 계</b>	<b>3,256</b>	<b>0</b>
		재산세	3,247	0
		도시계획세	9	0
		공동시설세	0	0

환경보호(070)		합 계	476	0
30	<b>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감면</b> -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재활용촉진기술 개발 보급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②)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31	<b>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b>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9, 070-07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90)-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초구, 070-074)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공시설세	0	0		
32	<b>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b> - 해양오염방지 업무용 등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오염물질 저장시설용 부동산 등에 등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 해양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③)	<b>소 계</b>	<b>476</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76	0		
33	<b>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b>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고, 제6조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5~20% 취득,등록세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070-076)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사회복지(080)</b>		<b>합 계</b>	<b>1,392,648</b>	<b>0</b>
34	<b>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b>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174①4)	<b>소 계</b>	<b>24,253</b>	<b>0</b>
		주민세	24,253	0
35	<b>장애인에 대한 감면</b>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4급) 장애인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자동차세 면제(조례)	<b>소 계</b>	<b>809,794</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자동차세	809,794	0		
36	<b>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b>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1②)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37	<b>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b>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취득하는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①)	<b>소 계</b>	<b>3,613</b>	<b>0</b>
		취득세	0	0

38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3④ 일부)	등록세	0	0
		재산세	3,613	0
39	<b>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b>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균등),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3 후단, §163①, §174①5, §186 1호, §238의2①, §242①, §245의2①1)	<b>소 계</b>	<b>46,958</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4,550	0
		재산세	23,444	0
		도시계획세	10,397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8,567	0
40	<b>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25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41	<b>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b>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272⑤ 일부)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표준감면조례)( '09신설)	<b>소 계</b>	<b>44,96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24,011	0
		도시계획세	19,81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1,139	0
42	<b>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 노인정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1①) - 무료,실비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조례)	<b>소 계</b>	<b>7,886</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6,961	0
		도시계획세	925	0
		공동시설세	0	0
43	<b>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4,5,6②)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8③)	<b>소 계</b>	<b>6,106</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150	0
		도시계획세	1,956	0
		공동시설세	0	0
44	<b>권익증진을 위한 감면</b> -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①1 3)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2)	<b>소 계</b>	<b>1,26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65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45	<b>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및 기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78③)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50% 감면,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278③, § 245의2①5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46	<b>노동조합에 대한 감면</b>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78②)	<b>소 계</b>	<b>90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05	0
47	<b>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b>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가 85㎡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73⑤) - 경찰공제회가 소유부동산을 국, 공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73④후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78④)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조례)	<b>소 계</b>	<b>90,084</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0,084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48	<b>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소유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고유업무용 면허 면허세 면제(지방세법 § 245의2①5, § 270④)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부금액 상당 취득 등록세 면제(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70①, 조례)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자동차세 면제(조례) - 재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단체가 소유하는 재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중상이자 유족은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조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 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7)	<b>소 계</b>	<b>200,577</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118	0
		자동차세	200,287	0
		도시계획세	71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101	0
49	<b>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b>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진료, 보호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70②) -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70③) - 독립기념관의 기념관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사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72①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①8)	<b>소 계</b>	<b>437</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28	0
		도시계획세	109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0	<b>주택거래에 대한 감면</b>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73의2) - 40㎡이하, 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51	<b>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69①)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60㎡이하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도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 50% 감면),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149㎡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 등록 25% 감면, 60~149㎡ 재산세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60㎡이하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도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세 50% 감면), 60~149㎡이하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 등록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85㎡ 재산세 25% 감면(조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 「임대주택법」 § 17①2 단서의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 설립등기 대도시종과 배제(조특법 § 119⑥4 ⑦, § 120④4)	<b>소 계</b>	<b>155,81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38,230	0
		도시계획세	17,580	0
		공동시설세	0	0
52	<b>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b>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9⑥) - 대상주택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이하,3억원미만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조례)	<b>소 계</b>	<b>0</b>	<b>0</b>
		등록세	0	0
		재산세	0	0
53	<b>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⑥, 080-088) -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제주특별자치도, 080-088)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보건(090)</b>		<b>합 계</b>	<b>92,930</b>	<b>0</b>
54	<b>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287①4,5, § 245의2①5) - 지방의료원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5	<b>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단,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의 경우 등록세 과세(지방세법 § 287②)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1호, § 127①1, § 163①, § 186 1호, § 238의2①, § 242①, § 245의2①5)-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163 ②6)	<b>소 계</b>	<b>92,517</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71,320	0
		도시계획세	21,197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56	<b>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73③)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법 § 273③, 090-092)	<b>소 계</b>	<b>401</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01	0
57	<b>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b> -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7① 1,2,3)	<b>소 계</b>	<b>1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	0
		도시계획세	0	0
<b>농림해양수산(100)</b>		<b>합 계</b>	<b>240,698</b>	<b>0</b>
58	<b>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b>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1①②, § 163②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62①③)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3② 전단) - 농업,축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67③ 일부) -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 106의2 ①1 일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75%→50% →25% 감면(개별감면조례, 부산 강서구,대구 동구,광명시,성남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부천시,고양시,시흥시,구리시,양주시, 100-101)-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광주 광산구, 100-101)-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대전 유성구, 100-101)- 구 웅상을 주거? 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0.007%( '07년도), 75% 감면('08년도), 50% 감면('09년도), 25% 감면('10년)(개별감면조례, 양산시, 100-101)-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0.8.11 이전에 취득한 개인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100-101)-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동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이연(개별감면조례, 보령시, 100-101)	<b>소 계</b>	<b>2,34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2,340	0
59	<b>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b>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3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 263③)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소 계</b>	<b>80,44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80,445	0
	<b>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경우 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4② 일부)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4② 일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 266②1)-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66②1의2)</li> <li>-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6②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89⑦)</li> </ul>			
61	<b>농업법인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영농,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6⑦ 일부)</li> <li>-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조특법 § 66③)</li> </ul>	<b>소 계</b>	<b>2,26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2,262	0
사업소세	0	0		
62	<b>임업인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 취득 등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63② 중 후단)</li> <li>- 임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67③ 일부)-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1 일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63	<b>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5호)</li> </ul>	<b>소 계</b>	<b>45,136</b>	<b>0</b>
		재산세	45,108	0
		도시계획세	28	0
		공동시설세	0	0
64	<b>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67①)</li> <li>-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 262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의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7②, § 163②3)</li> <li>-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67③ 일부)</li> <li>-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 106의2 ①1 일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65	<b>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조합법인의 영어,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6⑦ 일부)</li> <li>-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조특법 § 67③)</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66	<b>영농자금 등의 융자자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금고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중앙회 또는 연합회는 영농, 영어, 축산,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4①)</li> </ul>	<b>소 계</b>	<b>0</b>	<b>0</b>
		등록세	0	0
	<b>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66③)</li> </ul>	<b>소 계</b>	<b>103,681</b>	<b>0</b>
		취득세	0	0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25% 감면(지방세법 § 266④)-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66⑤⑥)</li>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83①1)-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75% 감면(표준감면조례, 100-104)</li> </ul>	등록세	0	0
		재산세	94,744	0
		사업소세	8,937	0
68	<b>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66①)</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69	<b>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2년간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70	<b>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65)</li> <li>-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li> </ul>	<b>소 계</b>	<b>6,834</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6,834	0
<b>산업 중소기업(110)</b>		<b>합 계</b>	<b>703,240</b>	<b>0</b>
71	<b>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79)</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 등록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72	<b>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조특법 § 119③, § 120③, § 121)</li> <l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0③④)</li> </ul>	<b>소 계</b>	<b>39,408</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9,408	0
73	<b>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80②)</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7①5)</li> <li>-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표준감면조례)</li> <li>-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개별감면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사업소세	0	0		
74	<b>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0①)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75	<b>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 288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 174①5)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④)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76	<b>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b>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 28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 284⑤) -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6 7)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광산구, 110-112)	<b>소 계</b>	<b>33,921</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3,921	0		
		담배소비세	0	0		
77	<b>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 278⑤) - 행자 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하여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83①4)	<b>소 계</b>	<b>3,10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102	0		
78	<b>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b> -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법 § 280③) - 과밀억제권역 외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조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인천광역시,00구, 110-114)- 광주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광주광역시,00구, 110-114)-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강원도,00시,군, 110-114)- 전라남도 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전라남도,00시,군, 110-114)-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광주광역시,광주 북구,광산구, 110-114)- 광주디자인센터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광주광역시,00구, 110-114)-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구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전라북도,전주시,장수군, 110-114)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79	<b>외국인투자 유지를 위한 감면</b>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등록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일부 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 121의2④, 조례)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일부 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 121의2⑤, 조례) -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취득 등록 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50% 감면 후 2년간 30% 감면(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 121의2②3, 조례) -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3년간 50% 감면 후 2년간 30% 감면(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 (조특법 § 121의2②4, 조례)	<b>소 계</b>	<b>468,83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68,835	0
80	<b>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수출용,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및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1,3,7)	<b>소 계</b>	<b>0</b>	<b>0</b>
		담배소비세	0	0
81	<b>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은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74①②, § 275①)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조례)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 재산세 3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82	<b>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b> -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 기존 시장의 입점상인과 부동산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자치구(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제외), 110-114)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83	<b>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가스공사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공사가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1①) -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취득하는 열수송관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1②)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 119⑤) -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110-115)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강원도,충청북도,제주도,강원도 00시군,제천시,충주시,음성군, 110-115)-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강원도,충청북도, 110-115)	<b>소 계</b>	<b>12,52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12,522	0
	<b>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광업권의 설정 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163②2)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으로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 285①)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석채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5③)</li> <li>-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li>-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40②1 4)</li> </ul>	면허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85	<b>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96의4 5호)</li> <li>-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세 우대세율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li> <li>-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96의4 5호)</li> <li>-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li> </ul>	<b>소 계</b>	<b>145,452</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자동차세	145,452	0
86	<b>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83①4)</li> <li>-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 119①2. 6. 12. 13. 15. 16. 17. 19. 20. 23. 24. 25. 26. 27. 28. 29, § 120①5. 11. 12. 15. 16. 19. 20. 21. 22. 23. 24. 25, § 120⑥2. 3. 4. 6. 9. 10. 11. 12. 13, 다만, 조특법 § 119①13. 28. 29 및 조특법 § 120①12. 24. 25의 경우 50% 감면)</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87	<b>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 119①3. 7. 8. 9. 10. 11, § 120①2. 6. 7. 8. 9. 10, § 120⑥1. 5. 7. 8)</li> <li>-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 119④, § 120⑤)</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88	<b>명목회사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조특법 § 119⑥1. 2, § 120④1.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조특법 § 119⑥3, § 120④3)</li> <li>-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 이내 자본 출자 증자 등기시 등록세 대도시 종과 배제(조특법 § 119⑦)</li> <li>-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 70% 감면(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제주도, 110-111)</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수송 및 교통(120)</b>		<b>합 계</b>	<b>1,489,871</b>	<b>0</b>
89	<b>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 289④)</li> <li>- 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등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 도시계획,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 289⑥)</li> </ul>	<b>소 계</b>	<b>14,78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8,117	0
		도시계획세	5,838	0
공공시설세	0	0		

		사업소세	825	0
		<b>소 계</b>	<b>0</b>	<b>0</b>
90	<b>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b> -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7호 후단, § 242①)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소 계</b>	<b>2,762</b>	<b>0</b>
91	<b>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4②) - 내항 또는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 외항여객운송용 선박,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4③)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당해 토지 재산세 50% 감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 289③ ⑤)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②)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2,762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지방교육세	0	0
		<b>소 계</b>	<b>0</b>	<b>0</b>
92	<b>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4①)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 50% 감면, 법인등기 등록세 50% 감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 대하여 최종건설사업준공시까지 재산세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120-125)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b>소 계</b>	<b>0</b>	<b>0</b>
93	<b>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b>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8의2①) -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68의2②)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소 계</b>	<b>0</b>	<b>0</b>
94	<b>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b>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한도로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8의3)( '09신설)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소 계</b>	<b>1,472,329</b>	<b>0</b>
95	<b>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b> - 전방조종자동차는 2009.12.31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2007.12.31까지 자동차세 50% 2008.12.31까지 자동차세33% 감면(조례) - 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120-126)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자동차세	1,472,329	0
		<b>소 계</b>	<b>0</b>	<b>0</b>
96	<b>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b>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용 부동산 및 자동차 검사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86①) -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재산, 도시계획, 사업소세 5년간 50% 감면(조례)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97	<b>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취득세	0	0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 이전등록, 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li> <li>-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ul>	등록세	0	0
		재산세	0	0
		<b>소 계</b>	<b>0</b>	<b>0</b>
98	<b>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80⑤1)</li> <li>- 물류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 280⑤2)</li> <li>-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li> <li>-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하는 자가 취득 등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개별감면조례, 대구광역시 대구 00구, 120-126)- 조합이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중 도매단지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건축 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개별감면조례, 대구광역시 대구 00구, 120-126)- 중부권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년간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정원군 연기군 칠곡군, 120-126)-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개별감면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120-126)</li> </ul>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b>소 계</b>	<b>0</b>	<b>0</b>
99	<b>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수, 수용, 철거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①, § 127의2②)</li> </ul>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합 계</b>	<b>3,442,265</b>	<b>0</b>
<b>국토 및 지역개발(140)</b>		<b>합 계</b>	<b>3,442,265</b>	<b>0</b>
100	<b>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 § 127의2②)</li> <li>-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 자금사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6.10.1일 현재 건축공사 중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이를 매수하여 2009.12.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제주특별자치도, 140-142)</li> </ul>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소 계</b>	<b>0</b>	<b>0</b>
101	<b>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 § 127의2②)</li> <li>-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비과세 및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 등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109③, § 127의2②, 조례)</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ul>	취득세	0	0
		등록세	0	0
		<b>소 계</b>	<b>0</b>	<b>0</b>
102	<b>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 289①⑤)</li> <li>-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을 제5904호)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분리과세(개별감면조례,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남동구 서구, 140-142)</li> </ul>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57	0
		도시계획세	1,496	0
		<b>소 계</b>	<b>1,553</b>	<b>0</b>
		<b>소 계</b>	<b>0</b>	<b>0</b>

103	<b>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b> -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 등 록세 면제,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 289② ⑤)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b>소 계</b>	<b>3,293,445</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3,293,445	0
104	<b>'산업단지에 대한 감면</b> -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 증축하는 경우 취득 등록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조 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 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조성 후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 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76① ②③) - 산업단지내에서 개축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 득 등록세 면제(표준감면조례) - 농공단지 안의 휴 폐업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 제, 재산세 *년간 50% 감면(조례) -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의 주요 유지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 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140-143)-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 증축하는 경우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개 별감면조례, 광주 광산구, 140-143)-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개별감면조 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140-14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5년 간 재산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140-143)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105	<b>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 취 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지방세법 § 274의2, 조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 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면 제, 전용면적 102㎡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75% 감면, 전용면적 135㎡ 이하의 경우 취득 등록세 62.5% 감면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106	<b>기업도시에 대한 감면</b> -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조특법 § 121의17③, 조례)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b>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b>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 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 277②) - 오피스개발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 -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 독립가옥집단지화사업, 재건축건설사업, 분산농지집단지화사업, 수해상습 지마을 대책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종전면적 상당 취득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107	<p>면제(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지촌주변개발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감면(조특법 § 121의9 ③)</li> <li>- 제주도 안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종과배제 등(조특법 § 121의 14②)</li> <l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소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특법 § 121의 16①②)</li> <li>-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140-142)</li> <li>-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가 선물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140-142)</li> <li>-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개별감면조례, 부산광역시, 140-142)</li> </ul>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08	<p><b>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재산세	0	0
109	<p><b>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조례)-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안의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li> </ul>	<b>소 계</b>	<b>146,827</b>	<b>0</b>
		재산세	134,372	0
		도시계획세	12,455	0
110	<p><b>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세 종과 배제(지방세법 § 283②)</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1	<p><b>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9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2	<p><b>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69⑤)</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3	<p><b>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li> <li>-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li> <li>-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등록세 75% 감면(조례, 080-088)</li> </ul>	<b>소 계</b>	<b>44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40	0
<b>과학기술(150)</b>		<b>합 계</b>	<b>0</b>	<b>0</b>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114	<b>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b> - 「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조례)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b>기타(900)</b>		<b>합 계</b>	<b>5,006,176</b>	<b>0</b>
115	<b>국가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대한 취득, 등록, 면허, 주민(균등할),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①, § 126①, § 162, § 174① 1, § 185①, § 238의2①, § 242①, § 245①, § 255①) - 국가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 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96의4 1,2,5호)	<b>소 계</b>	<b>4,844,413</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주민세	3,000	0
		재산세	3,494,868	0
		자동차세	12,423	0
		도시계획세	769,175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564,947	0
		지역개발세	0	0
116	<b>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②, § 126②)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17	<b>국가가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5②, § 238의2①, § 242①)	<b>소 계</b>	<b>301</b>	<b>0</b>
		재산세	298	0
		도시계획세	3	0
118	<b>국가가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255② 전단)	<b>소 계</b>	<b>0</b>	<b>0</b>
		지역개발세	0	0
119	<b>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b>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 119①1, § 120①1)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20	<b>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b> -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2 전단, § 232①7)	<b>소 계</b>	<b>0</b>	<b>0</b>
		담배소비세	0	0
121	<b>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b>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 등록, 주민(균등할),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 지역개발세 비과세(지방세법 § 106①, § 126①, § 174①2 전단, § 185①, § 238의2①, § 242①, § 245② 전단)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96의4 5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주민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122	<b>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b>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74①2 후단, § 196의4 5호, § 245② 후단)	<b>소 계</b>	<b>0</b>	<b>0</b>
		주민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123	<b>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b>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 174①3)	<b>소 계</b>	<b>0</b>	<b>0</b>
		주민세	0	0
124	<b>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b> -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2 후단, § 232①7)	<b>소 계</b>	<b>0</b>	<b>0</b>
		담배소비세	0	0
125	<b>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69④)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126	<b>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b>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6호, § 186 6호, § 238의2①, § 242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86 8호, § 238의2①, § 242①, 지방세법 시행령 § 201③) -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재산세,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당해 부과처분 취소(개별감면조례, 서울특별시, 00구, 900-903)	<b>소 계</b>	<b>15,316</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9,799	0
		도시계획세	5,517	0
		공동시설세	0	0
127	<b>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b>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1호, § 128 1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28	<b>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2호, § 128 2호)	<b>소 계</b>	<b>0</b>	<b>0</b>
		등록세	0	0
129	<b>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b>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3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130	<b>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b>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8 3호)-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 등록세 면제(조특법 § 119①5, § 120①4)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131	<b>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b>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5호)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b>소 계</b>	<b>136,975</b>	<b>0</b>
	<b>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 110 6호)	취득세	0	0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 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8 4호)</li> <li>-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7①5)</li> <li>-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8 5호)</li> <li>-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163②6)</li> <li>-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 126조의2 3호)</li> <li>-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 126조의2 8호)</li> <li>-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 126조의2 9호)-</li> <li>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96의4 5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68)</li> </ul>	등록세	0	0
		면허세	0	0
		자동차세	136,975	0
133	<b>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 127①5)</li> <li>-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항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232①4, 5, 7②)</li> </ul>	<b>소 계</b>	<b>0</b>	<b>0</b>
		등록세	0	0
		담배소비세	0	0
134	<b>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 201)</li> </ul>	<b>소 계</b>	<b>0</b>	<b>0</b>
		공동시설세	0	0
135	<b>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비과세(지방세법 § 107 5호, § 186 3호, § 238의2①, § 242①, § 245의2①4)</li> <li>-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등록,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 273 ⑥)</li> </ul>	<b>소 계</b>	<b>55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477	0
		도시계획세	73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36	<b>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 272 ③)</li> <li>-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 272④)</li> <li>-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 283①2, 3)</li> </ul>	<b>소 계</b>	<b>8,621</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8,493	0
		사업소세	128	0
137	<b>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사업소세 50% 감면(지방세법 § 272②)</li> <li>-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 288①7)</li> <li>-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쟁기념관 건립 운영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 도시계획 공동시설 사업소세 면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면제(조례)</li> </ul>	<b>소 계</b>	<b>0</b>	<b>0</b>
		취득세	0	0
		등록세	0	0
		재산세	0	0
		도시계획세	0	0
		공동시설세	0	0
		사업소세	0	0

138	<b>저축지원을 위한 감면</b>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특법 §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특법 § 89의3①②)	소 계	0	0
		주민세	0	0
139	<b>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b> -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 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개별감면조례, 서울 00구, 900-903) -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개별감면조례, 서울 00구, 900-903)	소 계	0	0
		재산세	0	0